

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보험 사업방법서 별지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(책임) - 일반배상 - 기타

2. 보험종목의 명칭 :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보험

3. 보험의 목적

- 1) 법률상의 배상책임 (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)
- 2) 개인 및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

4. 보험기간

- 1)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이상의 3년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5. 보험료 납입 및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

- 1)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을 적용하여 분할 영수할 수 있다.
- 2) 보험료 납입주기 : 일시납, 2회납, 4회납

6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- 1)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7. 기타

- 1) 보험료의 할인·할증에 관한 사항 :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- 2)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3) 모집의 제한 : 단체계약 특별약관, 단체취급 특별약관(I) 또는 단체취급 특별약관(II)을 첨부하는 계약에 한하여 인수한다.
- 4) 단체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 - ① 신규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(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 부가 서비스 등)의 경우, 아래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인수한다.
 - 가) 카드 가입신청서에 보험가입에 관한 안내 문구를 명시하고,
 - 나) 카드회원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동의 또는 확인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(체크박스)를 표기함

[카드 가입신청서 안내 문구 예시]

XX카드는 카드회사가 대표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며,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권리, 의무는 카드회사가 행사합니다.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XX카드가 부담하며,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카드회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② 기존 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계약(신용카드 무료 단체보험 부가서비스 등)의 경우, 전화, 이메일, 문자메세지, 이용대금청구서 등을 통하여 보험가입내용을 카드회원에게 안내하는 경우에 인수한다.

5)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

- (1)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.
- (2)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- 1.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 - 2. 모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- (3) 기타
 - 1.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 - 2.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
6) 휠체어 및 스쿠터 배상책임(지방자치단체 전용) 특별약관을 첨부하는 계약으로, 지방자치단체,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피보험자 세부 명단 없이 그 단체에 소속된 특정대상자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 수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Chubb. Insured.SM